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 □ 본 의원 외 3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위촉시 다양한 사회계층 중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안제 10조
 제5항 제4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